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공고

2024년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붙임서식>

☐ (붙임1)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및 부록서류 양식

① (별지 1호) 2024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② (별지 2호) 2024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

세부 사업명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공모 유형	자유 공모형														
▶ 지원목적 ○ 해외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 마케팅, 현지시장조사, 국제운송,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table><tr><th>지원 대상</th><th>연구기관</th></tr><tr><td>지원기업</td><td>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td></tr></table>				지원 대상	연구기관	지원기업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원 대상	연구기관																
지원기업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규모 및 내용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table><tr><th>지원분야</th><th>지원내용 및 범위</th><th>지원금액</th><th>선정 예정 과제 수</th></tr><tr><td>마케팅</td><td>■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td><td rowspan="4">과제당 최대 15백만원 (단년도)</td><td rowspan="4">총 10개 기업 내외</td></tr><tr><td>현지시장 조사</td><td>■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td></tr><tr><td>국제운송 지원</td><td>■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td></tr><tr><td>글로벌 협력</td><td>■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td></tr></table>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금액	선정 예정 과제 수	마케팅	■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과제당 최대 15백만원 (단년도)	총 10개 기업 내외	현지시장 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국제운송 지원	■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글로벌 협력	■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금액	선정 예정 과제 수														
마케팅	■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과제당 최대 15백만원 (단년도)	총 10개 기업 내외														
현지시장 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국제운송 지원	■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글로벌 협력	■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 정부지원금의 3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 (예시) 정부지원금 1,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0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 ※ 주요성과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 에 공개 ○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 보고서에 지원 사업을 통한 달성 수출액 제시 ○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																	
<table><tr><th>지원분야</th><th>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th></tr><tr><td>마케팅</td><td>■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계약 성과, 공식 통·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한 작업 증빙 서류</td></tr><tr><td>현지시장 조사</td><td>■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td></tr><tr><td>국제운송 지원</td><td>■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td></tr><tr><td>글로벌 협력</td><td>■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td></tr></table>				지원분야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계약 성과, 공식 통·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한 작업 증빙 서류	현지시장 조사	■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국제운송 지원	■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글로벌 협력	■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지원분야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을 활용한 계약 성과, 공식 통·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한 작업 증빙 서류																
현지시장 조사	■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국제운송 지원	■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글로벌 협력	■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 공시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 해야 함 ○ 사업 수행을 통한 '국산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시장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 마케팅·현지시장 조사·국제운송·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맞춤형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월 30일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기업)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구 분	주관기관
전체 지원규모	총 10개 기업 내외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내외

□ 지원 내용

-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관리기관(진흥원)은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내용 예시 >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지원 등
2	현지시장 조사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3	국제운송 지원	■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4	글로벌 협력	■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국내·외 판권 등

□ 지원 조건

- (신청기업) 정부지원금 비용의 30%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 사업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0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협약 체결 후(4월 예정), 2차분은 중간보고 진행 후(8월 예정) 사업비 교부

-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계상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입금하고 신청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총사업비를 생성

※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함

□ 성과 목표

- 사업 수행기업은 최종 평가 시 '최종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 사업 수행기업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신청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 비계량)를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사업 수행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액 및 해당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연번	분류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1	마케팅	■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통·번역 용역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번역 결과물(표지) 등
2	현지시장 조사	■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3	국제운송 지원	■ 해외운송비용 견적서를 포함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4	글로벌 협력	■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진흥원)

- 사업 공고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과제 당 15백만원, 사업 수행기업에 지급)
- 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진흥원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 사업 수행 관리 시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진행

-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주요성과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에 공개

○ 사업 수행기업

- 사업 수행기업은 지원 사업 수행 시 추진할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 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종료일에 결과보고서 제출

-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보고서 함께 제출 (정부 지원금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사업종료 전 지정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이 사용내역대로 지출되었는지 확인)
-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 보고에 본 사업을 통한 지원 성과를 제출
- 사업 수행기업은 진흥원에서 사업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 연도별 성과 : ① 지원 사업 당해 년도 및 차년도의 지원 제품 및 기업의 매출·수출 실적(계약건이 차년도로 진행될 경우 차년도 성과 제출) ② 지원 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 사업년도 이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한 후속 성과관리 예정(연2회)
- 사업 수행을 통한 국산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4

사업추진 절차

□ 추진절차



-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중간점검 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기업은 사업 수행 시 지원금 교부조건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요함 (지원금 사용 계획(산출내역서) 시 회계정산비용 포함 의무)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필요 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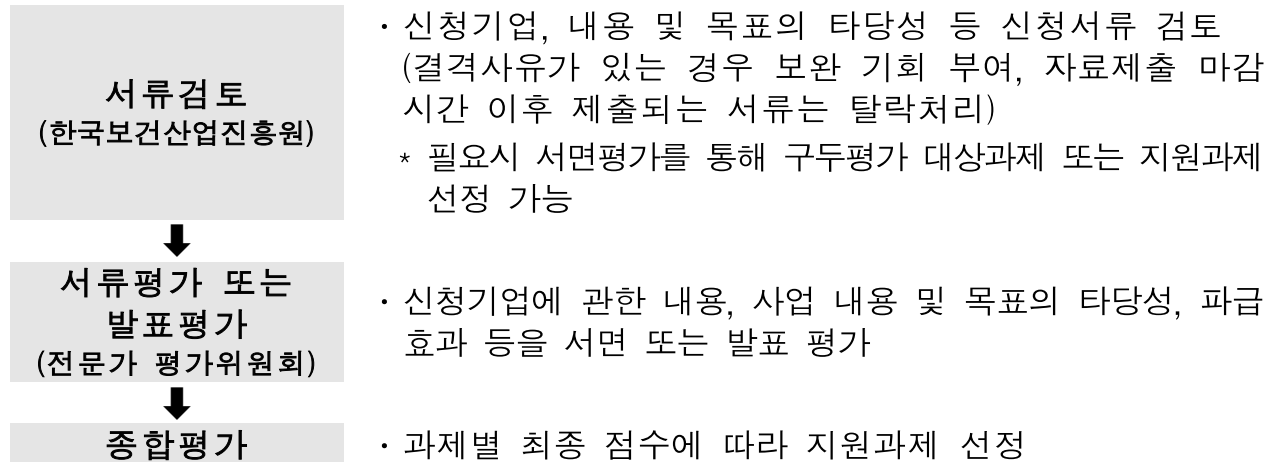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입인지, 선금청구 공문, 선금 교부신청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착수계, 사업공정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잔금 지급 필요 서류 :

잔금청구 공문, 잔금 교부신청서, 완료계,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요청 예정

□ 평가 및 선정 방법



※ 평가 시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 평가항목(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 신청기업의 적절성 40%,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50%, 파급효과 10% 비중으로 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의 적절성 (40)	- 맞춤형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부 * 기업규모, 종업원 수, 업력 등 - 신청기업 제품(기술)의 유망성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 수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 - 신청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업 추진 의지 - 신청기업의 경쟁력(연구개발 투자 비중 및 매출 등)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50)	-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 금액 규모의 타당성 및 지출계획의 구체성	파급효과 (10)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결과 활용 계획 등
가.감점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5점)	7. 벤처 인증기업(1점)	
	2.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8. 사회적 기업(1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9. 전년도 참여실적 "우수" 과제 기업(3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10. 전년도 참여실적 "미흡" 과제 기업 (-3점)	
	5. 여성기업(1점)		
	6. 장애인기업(1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 참여기업이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 참여기업의 제품이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제4호 및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은 제품**

□ 최종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 최종사업계획서[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선정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기타 협약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진흥원)으로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사전 승인 및 보고를 통하여 변경 사용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성과물을 사업 종료일(12월 2일)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
 - ※ 본 사업은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운영 지침 및 협약서에 근거하여 수행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함.

□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비 교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분할교부 방식으로 교부(상반기, 하반기)
-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국비+기업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집행예산 정산을 받아야 하며, 결과물과 함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 및 반납
- (사업비 변경) 사업비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공문 및 양식[참고2]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 모든 예산 집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하며, 예산 편성, 집행, 증빙, 변경, 회계감사 등 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 함.
 - ※ 변경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기관에 승인받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사업변경 내용을 기록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공고일로부터 ~ 3월 31일(일)
- 지원신청서 및 기타 부록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1부)
 - 이메일 제출처: hjpark13@khidi.or.kr
 -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5층)
 - ※ 우편의 경우 3월 31일 **발송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록서류 일체
- 이메일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록서류 **스캔 파일** 일체

■ 지원신청서 및 부록서류 양식 작성 후 제출(hwp, pdf 각 1부)

※ 파일제목 예시 : (신청기업명)_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지원사업 신청

■ 작성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스프링 및 여타의 제본 금지, 반드시 사업신청서 좌측 상단에 집게 고정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부록서류는 반드시 **각 사업신청서 내부 “V 첨부서류”에 첨부**

※ 부록서류(PDF파일) 원본파일을 목록의 연번대로 압축하여 **제출 요망**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 ② 사업자 등록증 ③사업자 등록증, ④최근 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⑤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신청기업의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드텍수출지원팀 박현주 연구원

☎ : 043-713-8565, E-mail : hjpark13@khidi.or.kr

【참고 1】 2024년도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보조비목 세목별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통신료 - 우편료 및 우송료 : 사업에 필요한 우편, 택배 및 기타 물류 등을 발송하는 비용(실비) - 해외전화사용료 : 해외 출장시 로밍폰 등 사용료(실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5.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전검토비
		6.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7.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비)
		8.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9.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10. 통·번역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번역료 및 통역료 (실비) * 편성 시 참고기준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 실 소요 경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 ☐ 사업명 :
- ☐ 주관기관(사업책임자) :
- ☐ 변경사유 :
- ☐ 변경사항

가. 사업 내용(연구원 변경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검토의견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 · 후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비목					
2. 비목					
○○○					
⋮					
총 계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함

○ 변경 후 총괄 사업비

(단위 : 천원)

항목 번호	항 목 명	금 액	비 율(%)
1	비목		
2	비목		
3	○○○○		
⋮	⋮		

○ 변경 후 산출 근거

구 분		금 액	구성비(%)
1. 비목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	원 x ○명 x ○개= 원	
	소 계		
2. 비목	△△△△△	원 x ○명 x ○개소= 원	
	소 계		
3. 비목	△△△△△	원 x 365일 x ○명= 원	
	소 계		
총 계		원	